

[별표 5]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(제25조 관련)

1. 적합성평가 표시기준

가. 기본도안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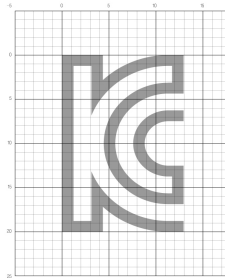


나. 식별부호 표시



다. 도안요령 및 색채

1) 도안 요령 : 적합성평가 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.



2) 색채

가)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을 사용한다.



나)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(KS A 0062에 따른 10YR 6/4 색채)과 은색(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)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남색,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.



※ 비고: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.

2. 표시방법

- 가. 전파법 제58조의2 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와 같이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(이하 “적합성평가표시”라 한다).
- 나. 적합성평가 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(상호명으로 표기), 기자재의 명칭(모델명), 제조연월,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.
- 다.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적합성평가 정보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포장상의 표시는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,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식별부호만 기재한다)
- 라.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.
- 마.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. 다만,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(檢定證印)[압인(押印)·타인(打印)·각인(刻印) 등을 말한다]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바.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.
- 사.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,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.
- 아.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.
- 자. 식별부호 표시방법

K	C	C	-	C	R	M	-	A	B	C	-	X	X	X	X	X	X	X	X	X	X	X	X	X	X	X	X
①				②	③	④		⑤				⑥															
방송통신 기기식별				기본인증 정보식별				신 청 자 정보식별				제 품 식 별															

-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“KCC”를 기재한다.
-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“인증분야 식별부호”를 기재한다.

인증분야	식별부호
적합인증	C (Certification)
적합등록	R (Registration)
잠정인증	I (Interim)

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“시험분야 식별부호”를 기재한다.

시험분야	식별부호
무선분야	R (Radio)
유선분야	T (Telecommunication)
전자파분야	E (Electromagnetic Wave)
무선, 유선, 전자파 복합분야	M (Multi Function)

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“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”를 기재한다.

인증신청자 구분	식별부호
제조자	M (Manufacturer)
수입자	I (Importer)
판매자	S (Seller)
비고 :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,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.	

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소장이 부여한 “신청자 식별부호”를 기재한다.

⑥란에는 신청자의 “제품 식별부호(영문, 숫자, 하이픈(-) 혼용 가능,)”를 기재하여야 하며,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.

차.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·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·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.